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진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1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9월 3일

발 의 자 : 박진형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최관술·유동균·김상훈·김동율·
김기대·조규영·김진철·김정태·
성중기·김제리·이순자 의원
(11명)

1. 제안 이유

서울시는 시내버스운송사업·마을버스운송사업·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·전세버스운송사업·택시운송사업 등에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고,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의 경우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간 형평성을 담보코자 함

2. 주요 골자

가. '정의'에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추가함(안 제2조제1호)

나. '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' 대상에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 및

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
추가함(안 제4조제1항)

다. 기타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함(안 제4조제3항, 제7조제1호,
제11조제2항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개발제한
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및 같은 법 시
행령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조표(별첨)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「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”를 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, 「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사업자,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(이하 “충전시설설치업체”라 한다)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”를 “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사업자,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(이하 “충전시설설치업체”라 한다)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”를 “전세버스운송사업자,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택시 이외의 차량을”을 “택시,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을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 차고지 용도로”를 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,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와 화물자동차 차고지 용도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, <u>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----- ----- <u>전세버스운송사업자,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</u>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입주업체의 행위제한)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시내버스, 마을버스, 특수여객 장의차량, 전세버스, <u>택시 이외의 차량을</u> 주차시키는 행위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7조(입주업체의 행위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<u>택시,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을</u> -----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준용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<u>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 차고지 용도로</u> 매입한 토지와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 운영관리(부대시설 포함)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.</p>	<p>제11조(준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,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와 화물자동차 차고지 용도로</u> ----- ----- -----</p>

〈첨부.2〉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호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, 실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박진형